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69
----------	-------

제출년월일 : 2019.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 및 생명 존중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된 사항 반영

- 법 제4조제3항 → 법 제4조제4항
- 법 제15조제6항 → 법 제15조제7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 위원회의 위원은 → 위원회는(안 제15조제2항)
- 위원으로 →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안 제15조제2항)
- (公獸醫)로 하여금 → (公獸醫)에게(안 제12조제2항)
- 한다 → 하며,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안 제16조제1항)
-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분양자에게(안 제19조제1항)
- 활동에 대하여 → 활동을 활성화하고(안 제19조제2항)

다. 동물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 반려동물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7호)
- 구청장의 의무 신설(안 제3조제3항)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5조제8항~제11항)

- 길고양이의 관리 등 신설(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신설(안 제20조)
- 반려동물의 지원 등 신설(안 제21조)
-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신설(안 제22조)

3. 주요 토의의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3. 7. ~ 3. 27.(제출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사항 없음
-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19.4.16.)
-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개정조례안 1부.
- 6)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7)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원회의 위원은”은 “위원회는”으로 하고, “위원으로”를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2항 및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4.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⑪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제2항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公獸醫)로 하여금”을 “(公獸醫)에게”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을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분양자에게”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활동에 대하여”를 “활동을 활성화하고”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 보호 조례</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 략)</p> <p><u><신 설></u></p> <p>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②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생 략)</p> <p>② <u>위원회의</u>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u>위원</u>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p>	<p><u>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안)</u></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u></p> <p>제3조(구청장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청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위원회는</u>----- ----- -- <u>위원으로</u> 성별을 고려하여 -----</p>

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을 40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를 대표하는 사람을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1. (생략)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 6. (생략)
- ③ ~ ⑦ (생략)

<신설>

<신설>

<후단 삭제>

1. (현행과 같음)
2. -----
----- 법 제4조제4항-----

3. ~ 6. (현행과 같음)
- ③ ~ ⑦ (현행과 같음)
- ⑧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및 성명
3. 자문 안건과 자문 내용
4.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동물보

<신 설>

<신 설>

호·동물복지 담당팀장으로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⑪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⑧·⑨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별 제15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항 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생 략)

② 구청장은 구조한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② (생 략)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⑫·⑬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15조제7항 -----

제12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公獸醫)에게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소요경비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요 경비의 산정기준은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별표1]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1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삭제>

제16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 하
며,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와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동물보호센터, 동물분양센터 및 분양자에게 -

② 구청장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교육·홍보·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

② -----
----- 활동을

-----.

제20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반려동물의 지원)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반려동물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신 설>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생명존중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유기동물의 분양을 활성화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물분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동물분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동물복지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백신접종 등)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염인국
연 락 처	02-3153-8563